

# 졸업사정위원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졸업사정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생의 졸업여부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졸업사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명칭)** 본 위원회는 한국항공대학교 졸업사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졸업대상자에 대한 졸업 여부에 관한 사항
2.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
3. 기타 졸업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

**제4조 (구성)**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교무처장, 공과대학장, 항공경영대학장, 학부(과)장(교양학과 제외)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3.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교무팀장이 이를 맡는다.
4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.

**제5조 (의결)**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 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